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 · 사회 · 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09호
2. 발 의 자 : 박상혁 의원
3. 발의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 제안이유

- ESG(Enviroment, Social,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ESG 경영의 가치는 기업 경영에서 시작되어 공공기관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하여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제2조).
2.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6.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5. 10. 28. ~ 2025. 11. 1.) 결과: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209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하여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 이와 같이 ESG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¹⁾,

ESG 용어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²⁾와 2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³⁾에서 처음

1) 산업통산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https://k-esg.org/understanding/concept_evolution>.

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사용되었고, 이후 2006년에 UN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⁴⁾에 ESG가 반영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⁵⁾.

- 이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독은 2020년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이에 대한 양질의 ESG 정보공시를 강조하였는바⁶⁾,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장기적인 투자의 위험 요소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기업들이 스스로 ESG를 관리하며 경영의 규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는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동 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게 한바 있으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임
<<https://unglobalcompact.kr/about/un-global-compact/>>.

3) 2004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더욱 글로벌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이슈를 금융업계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금융기관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가 「Who Cares Wins」 보고서를 작성함.

4) PRI은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 과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음.
<<https://www.unpri.org/about-PRI>>

- 원칙1: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 반영할 것임
- 원칙2: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ESG 이슈를 투자정책 및 운용에 활용할 것임
- 원칙3: 우리는 투자하는 기관의 ESG 이슈에 대해 적절한 공시 요구할 것임
- 원칙4: 우리는 투자 사업 내에서 원칙의 수용 및 이행을 촉진할 것임
- 원칙5: 우리는 원칙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 원칙6: 우리는 각각 원칙 이행을 위한 활동과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임.

5) KDI 경제교육·정보센터<<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74>>

6) 블랙독 CEO 래리핑크(LARRY FINK)는 2020년에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신을 통해 “석탄 개발 업체나 화석연료 생산 기업 등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ESG 우선주의를 천명함.

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마련한바,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ESG 경영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ESG 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ESG 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안 제6조는 사업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자문단의 구성,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자문단의 운영, 안 제11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제명에 대한 검토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부득이하게 외국어·외래어를 법령에 사용할 때는 먼저 고유어나 어문 규범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⁷⁾.
- 아울러 전문용어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익숙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의미 파악이 어렵고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문에서는 가능한 한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풀어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⁸⁾.
- 이를 종합하건데 동 조례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를 괄호안에 적시하고, 괄호 앞에는 ‘환경·사회·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사회’와 달리 ‘거버넌스’만 외국어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ESG 경

7)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05.

8)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04.

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선정한 바 있고⁹⁾, 산업통산부 산하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에서는 ESG 경영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에서도 ESG 경영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 제명 중 ‘거버넌스’를 ‘환경·사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ESG 경영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이에스지(ESG) 경영’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1] 타시도교육청 ESG 경영 조례명

	법령명	지역명	제·개정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정	2024. 5. 10.	2024. 5. 10.
2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정	2025. 4. 25.	2025. 4. 25.
3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정	2024. 7. 15.	2024. 7. 15.
4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제정	2023. 6. 1.	2023. 6. 1.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정	2024. 9. 27.	2024. 9. 27.
6	충청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제정	2023. 10. 10.	2023. 10. 10.

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2.1.19.),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

3)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ESG 경영 평가 및 관리 방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등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안 제3항), 이를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안 제4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획재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부문 특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반영한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¹⁰⁾.

[표-2]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총괄편	▶ ESG 목표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목표 및 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대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
환경 (E)	▶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적 요구 간의 균형 달성 ↳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
사회 (S)	▶ 안전/노동·인권/상생협력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구성
지배구조 (G)	▶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적 운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

10) 기획재정부(2025.12.10.).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¹¹⁾ 및 제5조¹²⁾에 따른 공공기관의 ESG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된 점이 크다 할 것이나,

ESG 경영이 추구하는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보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생략)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 ⑥ (생략)

- 따라서 안 제5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ESG 경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ESG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자문단에 대한 검토(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¹³⁾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문 기관 설치 요건은 동 법 시행령 제78조 각 호¹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ESG 경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며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ESG 경영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 요건이 충족되는바 안 제7조에 별도 문제

13)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 등의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조문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 제8조제2항에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 1호) 및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 2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당 조문은 안 제8조제2항 중에 위원을 호선할 경우 동 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위원회로 보이는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방법, 간사 지명 등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령 제79조¹⁵⁾에 따라 자문위원회 규모에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79조제2항을¹⁶⁾ 준수하고 있으며, 연임 규정에 있어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전 위원 경력이 연임제한 횟수에 산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는 등 자문단 운영의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회의 개최 횟수 및 의결 사항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원장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 회의 개최 횟수 등(안 제2항)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안 제3항) 등으로 구성되어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 정족수에 관한 것 등 자문단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활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